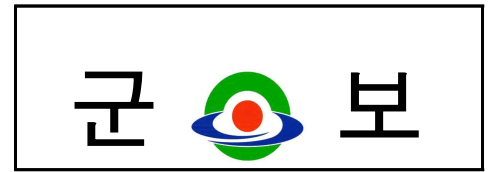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85호 2023. 11. 13.(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하천점용 허가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3-161호)

공 고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3-1418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담당관(전화 650-6065)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예 천 군 수

구 분	하천점용허가
하 천 명	한천(지방하천)
점 용 자	예천군 체육사업소
주 소	예천군 예천읍 양궁장길 38
위 치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310-1번지
점용면적	773㎡
점용목적	운동시설(농구장) 설치
사업개요	농구장 설치
점용기간	2023년 11월 13일 ~ 2028년 11월 13일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중심 행정을 추진하고 국가보훈부의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요청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나. 수수료의 감면 대상 확대(안 제7조제1항제3호 ~ 제9호)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추가

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수수료 전액 감면

사항 신설(안 제7조제1항제11호)

○ 주민등록 등본, 초본 : (기존) 200원 → (신설) 전액 감면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addadd@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재무과

3) 팩스 : 054-650-687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전화: 054-650-687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것을 제외하고는”을 “것 외에”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제3조”를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초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u>것을 제외하고는</u>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조(적용) ----- ----- --- <u>것 외에</u> ----- -----.
제4조(기준) ① <u>제3조</u> 의 별표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때 또는 수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제4조(기준) ① <u>제3조제1항</u> ----- ----- -----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 -----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 <u>조제2호</u> ----- -----
2.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
자 및 참전유공자가 신청·등
록하는 제증명 등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
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
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
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등록
하는 제증명 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
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
세환자가 신청·등록하는 제
증명 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등
록하는 제증명 등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
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신 설>

<신 설>

3. (생 략)

<신 설>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
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
명 등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
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
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
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10. (현행 제3호와 같음)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

② 삭 제 ③ (생 략)	<u>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u> <u>주민등록등본 · 초본</u> ③ (현행과 같음)
-----------------------------	--